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61460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61460 판결

서울지방법원 1999. 9. 10 선고 99나3276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AA외 5인)

【피고, 상고인】 신BA기금(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B 담당변호사 김AB외 4인)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A은행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9. 9. 10. 선고 99나3276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가 그 보증채무이행에 따른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약관에 따른 적법한 담보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그 담보물이 상실 또는 감소되었다거나 원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보존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담보취득 또는 담보보존의무위반에 따른 면책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해석의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고 공장용지의 소유권이전 즉시 추가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을 우선해지 하실 것”이라는 특약과 이러한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사항을 신용보증서에 기재한 취지는, 원고가 원래 예상했던 담보를 모두 취득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취득한 담보의 가치만큼은 보증계약을 해지하여 그 범위 내에서 신BA기금의 신용보증책임을 면하게 한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다53964 판결 참조).

그러함에도,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담보의 담보가치에 따른 피고의 면책범위를 따져 보지 아니한 채 피고의 신용보증책임은 원고의 주담보 취득과 무관하게 위 대출원리금의 전 범위에 관하여 여전히 존속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거기에는 위 신용보증서에 기재된 특약조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